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53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이용선・이기헌・박주민

박정현・박 정・김남희

김남근 • 박홍근 • 오세희

김문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「한・아프리카재단법」에 따른 한 ・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 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, 중 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.

아울러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「국가공무원법」이 개정되면,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하고자 함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·제5호·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미성년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	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	
다.	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2. 미성년자</u>	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<u>사람</u>
3. 피성년후견인	<u>3. 미성년자</u>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	<u><삭 제></u>
아니한 사람	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	<u><삭 제></u>
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	
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	
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	
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	
<u>람</u>	
5의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	<u><삭 제></u>
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	
중에 있는 사람	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	<u><삭 제></u>
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	
정지된 사람	